

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논문심사 규정

1.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회칙 및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.
2.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.
3. 논문은 산업간호학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와 최신 산업간호학의 동향 및 학문적 가치가 있는 원저에 한한다.
4. 석·박사 학위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.
5.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.
6. 논문 1편 당 심사위원은 3인(영문교정위원 별도)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.
7.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8. 논문은 양적연구, 종설 및 질적 연구에 따른 평가서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.
9.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(무수정 게재), 수정 후 게재가능, 수정 후 재심 및 불가능(게재불가)으로 판정한다.
 - 1) '게재가능'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.
 - 2) '수정 후 게재'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, 심사위원이나 혹은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.
 - 3) '수정 후 재심'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을 요구한 심사위원의 재심 후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.
 - 4) '불가능(게재불가)'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.
 - ① 연구 주제가 산업간호학적 관련성이 결여된 경우
 - ② 연구 내용이나 결과가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
 - ③ 타 연구논문의 일부 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
 - ④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(게재불가)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10. 심사위원 중 2명이 '불가능(게재불가)'으로 판정했을 경우, '불가능(게재불가)'으로 판정한다.
11.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.
12.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.
13.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7~10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, 심사결과를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내야 한다.
14.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